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
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3. 7. 13
行政財務委員會

1. 審査經過

-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1993年 7月 9日 區廳長提出
- 나. 回附日字: 1993年 7月 7日 回附
- 다. 上程日字: 第19回 永登浦區議會(開會中)第1次 委員會(1993年 7月 13日) 上程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總務局長 梁大雄)

가. 提案理由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은 건물평가액과 각층별로 일정비율의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고 있어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된 아파트형 공장건물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등 부담이 높아 이를 조정하고자 함.

나. 主要內容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 대부료등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3. 專門委員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姜性熙)

가. '93. 7. 6. 영등포구청장이 개정 요청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바 동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은 건물평가액과 각층별로 일정비율의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고 있어

나. 아파트형 공장건물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 부담이 높아 이를 조정하여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대부할 경우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 대부료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동조례 제3호 다음에 제4호를 신설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다. 현재 우리 구에는 대상 건물이 없으나 앞으로 생길것을 예상하여 '93. 6. 1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달된 개정조례 준칙에 따라 요청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果: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
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81
----------	-----

제출년월일: 1993. 7. 6.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提案理由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은 건물평가액과 각층별로 일정비율의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고 있어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된 아파트형 공장건물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등 부담이 높아 이를 조정하고자 함.

2. 主要骨子

공공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여 대부료등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
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4조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신설) 	<p>제24조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u>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u>

'93년도영등포구청수물품취득동의(안)심사보고서

1993. 7. 13.
行政財務委員會

1. 審査經過

- 가. 提案日字 및 提案者: 1993年 7月 6日 區廳長提出
- 나. 回附日字: 1993年 7月 7日 回附
- 다. 上程日字: 第19回 永登浦區議會(開會中)第1次 委員會(1993年 7月 13日) 上程議決

2. 提案說明의 要旨

(提案說明者 總務局長 梁大雄)

가. 承認理由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하므로 최소보유로 인한 업무수행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낭비를 방지코자 함.

나. 主要内容
재산세 자료입력과 고지서 출력에 따른 컴퓨터와 각종 회의시 서류 분류에 따른 시간 및 인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문서정합기 구매

3. 專門委員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姜性熙)

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동의 요청한 '93년도영등포구청수물품취득동의(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향후 도입할 계획인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에 대비하여 시도별로 각기 다르게 구축 운영되고 있는 재산세 전산자료를 전국적으로 표준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컴퓨터 3대(세무1과)와 각종 회의자료등 등사된 인쇄물을 신속히 분류, 편집하기 위한 문서정합기(총무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 현재 사용중인 컴퓨터로는 용량부족으로 소기의 목적달성이 곤란한 점등을 감안하여 요청한대로 취득승인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果: 원안 가결

'93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수물품취득동의(안)

의안 번호	182
----------	-----

제출년월일: 1993. 7. 6.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1. 提案理由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과소보유로 인한 업무수행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 예산낭비를 방지코자 함